##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67 발의연월일: 2021. 11. 17.

발 의 자:임이자·권영세·김성원

김형동 • 박대수 • 박덕흠

양금희 • 이명수 • 추경호

한무경 · 홍석준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·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'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'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('21. 6. 24)를 통과함.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·도 (부산·대구·울산·경북·경남)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(구미·창녕·합천)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.

그러나 현행법상 구미·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,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'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.

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

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4(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) ①「수도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·군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(이하 "지역상생협력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·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시·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3조의4(지역상생협력사업의
	지원) ①「수도법」제3조제7호
	에 따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
	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
	하는 시·군을 관할하는 시장·군
	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
	유도하는 사업(이하 "지역상생
	협력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
	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	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
	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	<u>야 한다.</u>
	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
	계획 수립·시행 절차 등 사업
	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
	<u>로 정한다.</u>
제3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35조(기금의 용도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용도로 운용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7의2.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</u>
	<u>생협력사업</u>
8. ~ 16. (생 략)	8. ~ 16. (현행과 같음)